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448
----------	-------

발의연월일 : 2025. 12. 19.

발 의 자 : 김위상 · 이종배 · 김선교
구자근 · 박충권 · 박성훈
이인선 · 김소희 · 김성원
조지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는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장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채당금을 지급한 경우 그 근로자를 사용하는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인 제도를 악용하여 법인 명의의 재산을 두지 않는 등의 방법을 통해 변제금을 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임금등의 체불 발생 당시 귀책사유가 있는 법인의 출자자에 대해서는 변제금의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이 납부해야 할 변제금, 연체금,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임금등의 체불 발생 당시 귀책사유가

있는 법인의 출자자가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변제금의 제2차 납부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이 법에 따른 변제금,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임금등의 체불 발생 당시 귀책사유가 있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제금의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과되는 변제금부터 적용한다. 다만, 고용노동
부장관이 확인한 체불 임금등의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임금등 체불의 발생 당시에 귀책사유가 있는 무
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4조의2(변제금의 제2차 납부 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이 법에 따른 변제금,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임금등의 체불 발생 당시 귀책사유가 있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 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u>